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합559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8. 10. 8.자 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18. 11. 8.자 2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는 C 등의 딸이다. C 등과 피고는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5328호 판결에 기한 2021. 6. 11. 기준 원리금 합계 692,823,249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6.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계약기간 2018. 11. 8.부터 2020.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018. 11. 8. 잔금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G는 2020. 8. 29.부터 2020. 9. 29.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6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6. 15,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해 6. 17. 5,000,000원, 같은 달 23. 6,000,000원 등 합계 3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고, G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20. 9. 25. 150,000,000원, 2020. 9. 29. 7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C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C가 실제 임차인임에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8. 10. 6. 30,000,000원, 2018. 11. 8. 230,000,000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여 피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합계 26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제1 예비적 청구)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26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2 예비적 청구)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은 C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바,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와 공모하여 C의 재산은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가사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C에게 220,000,000원을 보내 주었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가 2020. 5. 6.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신용대출을 받아 C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원금 36,000,000원, 이자 4,000,000원)과 상계처리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미 원고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상당을 C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제1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미 C에게 260,000,000원을 전부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더 이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제2 예비적 청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가 아닌 피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C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61294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H조합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절차를 통하여 2020. 6. 5. D으로부터 14,294,831원을 변제받는 등 피고가 G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C에게 반환할 당시 C 등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② 피고는 C 등의 딸로서 C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피고는 부친인 C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를 그대로 C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C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C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과 달리 C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뒤 최종적으로는 C에게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C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채권 실현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김보현, 판사 전경민